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25년도 영주시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	변	대 변		
비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	
12,832,525천원	(1,182,808)원	11,649,717천원	_	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	변
자 산	부 채	자 본
240,858,160천원	1,350,881천원	239,507,279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1,182,808)천원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47,693,444)천원
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42,616,109천원
Ⅳ. 현금의 증감(ㅣ+Ⅱ+Ⅲ)	(6,260,143)천원
V. 기초의 현금	6,260,143천원
VI. 기말의 현금	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9,722전 나. 연 간 생 산 량 : 11,920천㎡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32.6천㎡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지 출 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 11.649.717천원 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 12.832.525천원 제 1 항 영 업 수 익 11.462.412 " 제 1 항 영 업 비 용 12.707.960 " 제 2 항 영 업 외 비 용 제 2 항 영 업 외 수 익 187.305 " 0 " 제 3 항 특 별 이 익 제 3 항 예 HI 0 " ΗΙ 124.565 "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남는 자본적수입액 1.182.808천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부족액 (1.182.808)천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 丌 제 1 관 자본적지출 47.867.475천원 제 1 관 자본적수입 49.050.283천원 제 1 항 유형자산취득 47.671.424 " 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 0 " 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 0 " 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 0 " 제 3 항 비가동설비자산취득 0 " 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 42.790.140 " 제 4 항 기타자본적지출 22.020 " 제 4 항 유 보 자 금 6.260.143 " 제 5 항 예 НΙ 174.031 " HI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관	항	사	업	명	총	액	연	도	연 할 액
		해		당	젒	음			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٨ŀ	항	ار		간		한	도	앤	
		하	당	없	0 0				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.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채 목 적	한 도 액	기 채 방	기 채 방 법		상 환 방 법
	해 5) 없	0 0		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.821.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4.199.023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10.600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.405.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	比	종	류	명	칭	수	량	日	앤
				해 당	없 음				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25. 5. .

영 주 从